Xi rn 신설동역자이르네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코로나19 관련 안내 사항]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신설동역자이르네는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 될 수 있으며, 함께 운영되는 신설동역자이르네 홈페이지(http://신설동역자이르네.com)를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가능기간(별도공지)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국토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견본주택 방문 기간 내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열 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등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사업주체가 고지한 해당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입장이 불가합니다.

※ 서류 접수 및 공급계약으로 인한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청약자 혹은 당첨자 및 계약자 본인에 한하여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가능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Google Play　Apple Store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6-48 일원에 공급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동대문구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이며, 금회 공급되는 주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서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 됩니다.

■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4.25.입니다.

■ 본 건축물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건축과-10108호(2022.04.22)]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본 공동주택은 「주택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제9호 규정을 적용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주택법」제5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제57조 등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본 건축물은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5.) 현재 만19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및 법인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은 군별 1인 1건 청약이 가능하며, 각각의 군별에 청약할 경우 1인 최대 2건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동일군 2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가 무효 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군별 타입·층·호수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됩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 선정하지 않으며, 정당 당첨자 계약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 및 신설동역자이르네(02-959-7800)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 고객 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 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자격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신청 또는 계약체결 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바라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에 의거 견본주택 및 신설동역자이르네 홈페이지(http://신설동역자이르네.com)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는 견본주택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	○	○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건축과-10108호(2022.04.22)]

■ 공급대상물

- 공급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6-48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지하 4층 ~ 지상 20층 3개동 중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143세대(일반분양 143세대) – 대지면적 : 4,431.10㎡ – 연면적 : 전체 건축물 연면적 29,680.508㎡
- 본 건축물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복합 계획됨. – 용도지역지구 등 : 제1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 주차대수 : 총 261대 중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143대
- 층별용도 : 지하 4층~지하 1층(주차장 및 기계실), 지상 1층(근린생활시설), 지상2층 (공공기여시설), 지상 3층~지상 20층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지상3층~지상18층(오피스텔)

■ 입주예정일 : 2024년 11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행수탁자 : 코리아신탁(주)　■ 시행위탁자 : 에스티에스개발(주)　■ 시공사 : 주관 자이에스앤디(주) / 지원 지에스건설(주)　■ 분양대행사 : (주)연합플래닝

■ 신탁업자(시행수탁자)겸 분양대금 관리자 : 코리아신탁(주)　■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분양하는 사업으로 분양대금 관리자와 분양사업자가 동일함.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이 확보 되었으며, 동법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산정한 내진능력은 진도등급(Ⅶ-0.204g)입니다.

지역구역계수(S)	지반의 종류	중요도계수(IE)	내진설계범주	건물 중요도
0.176(서울시)	S4	1.2	D	1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 세대)

주택관리번호	군	타입(약식표기)	주택형(전용면적)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2022950025	1군	42A	42.836	42.836	16.868	59.704	46.564	106.267	15.865	36
		42B	42.972	42.972	16.921	59.893	46.711	106.605	15.915	35
	2군	43	43.851	43.851	17.267	61.118	47.667	108.785	16.241	36
		45	45.943	45.943	18.091	64.034	49.941	113.975	17.016	36
합계										143

■ 주택형 표시 안내

(단위 : ㎡)

타입(약식표기)	42A	42B	43	45
주택형(전용면적)	42.836	42.972	43.851	45.943
건축허가(변경) 주택표기	상동	상동	상동	상동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http://신설동역자이르네.com), 분양안내/홍보 제작물 등은 약식표기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군'으로 청약 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군	타입(약식표기)	동	호.라인	공급세대수	층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50%)					잔금(4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 시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입주지정일
										22.10.17	23.03.17	23.10.17	24.02.16	24.06.17	
1군	42A	A(101)동	2호	18	최저가	550,485,003	266,514,997	817,00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326,800,000
		B(102)동		18	최고가	582,826,839	282,173,161	865,000,000	86,500,000	86,500,000	86,500,000	86,500,000	86,500,000	86,500,000	346,000,000
	42B	A(101)동	4호	18	최저가	561,265,615	271,734,385	833,000,000	83,300,000	83,300,000	83,300,000	83,300,000	83,300,000	83,300,000	333,200,000
		B(102)동		17	최고가	593,607,451	287,392,549	881,000,000	88,100,000	88,100,000	88,100,000	88,100,000	88,100,000	88,100,000	352,400,000
2군	43	A(101)동	1호	18	최저가	559,244,250	270,755,750	830,000,000	83,000,000	83,000,000	83,000,000	83,000,000	83,000,000	83,000,000	332,000,000
		B(102)동		18	최고가	591,586,087	286,413,913	878,000,000	87,800,000	87,800,000	87,800,000	87,800,000	87,800,000	87,800,000	351,200,000
	45	A(101)동	3호	18	최저가	548,463,638	265,536,362	814,000,000	81,400,000	81,400,000	81,400,000	81,400,000	81,400,000	81,400,000	325,600,000
		B(102)동		18	최고가	580,805,474	281,194,526	862,0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344,800,000

※ 본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상품입니다. ※ 총 분양금액은 면적, 층, 향, 구조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분양금액은 각 세대별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각 세대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단수조정하여 셋째자리로 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건축허가(변경)의 합산면적과 분양면적의 합산이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주택법에 따라 건축물 내벽의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시설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공공기여시설 각각의 연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각 세대 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전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진입통로,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등)은 전체공용으로 하며, 각 세대별로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면적은 건축허가(변경) 면적을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통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자체심의 결과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분양조건은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타입별 발코니 면적은 상이하며, 일부 타입의 경우 발코니 초과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진입통로,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소방의 피난 등에 필요한 전체 층의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의 면적은 각 용도별 시설(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공공기여시설)의 사용에 따라 건축허가(변경) 도서 층별 면적 산출근거표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건물의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중도금은 지정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에 대해서는 납부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외관 색채 및 패턴, 부대시설 등의 기타시설은 경관심의 재심의 등을 통해 색상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인 서울시 동대문구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 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관리실 등)은 공용면적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세대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 됩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등 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세대별 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나 위치지정 및 구분등기는 허용 되지 않습니다. • 중도금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 공정이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 이상 투입이 확인 된 시기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가 납부지정일보다 늦을 경우 해당 연체일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은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이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 잔금 중 50%는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승인일 이후 15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15일 이후에는 미납한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 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 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의 개발계획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그리고 정부정책 및 해당 사업주체의 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02-959-7800)으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Ⅱ 청약신청 및 공급일정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게시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5.) 현재 만19세 이상인 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은 군별 1인 1건 청약이 가능하며, 각각의 군별에 청약할 경우 1인 최대 2건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 동일인이 동일군 2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가 무효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청약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군별 동·호수를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됩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 선정하지 않으며, 정당 당첨자 계약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일 시	2022년 5월 9일(월) ~ 10일(화), 2일간	2022년 5월 13일(금) 16:00 이후	2022년 5월 16일(월) ~ 2022년 5월 17일(화), 2일간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군별 타입·동·호수 무작위 결정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계약 (10:00~16:00)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신설동역자이르네 견본주택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45-2)	

※ 스마트폰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Home"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PC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및 스마트폰[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 에서 '청약Home' 검색]를 통해 청약 가능하며, 청약 이전에 주택청약 참가은행(KB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 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 대행은행인 수협은행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안내

구분	내 용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 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체한도 확인)
방법 및 절차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군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 신청금 출금계좌번호,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시 30분으로 청약신청 진행중 17시 30분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청약신청 시 유의바랍니다.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신청금 및 납부방법

구 분	청약신청금	내 용
모든 군 공통	1,000,000원 (금 일백만원)	• 청약 신청 시 : 청약 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통장 개설 후 청약 신청금 이상의 금액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합니다.(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수협은행 전 지점)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및 법인 등을 제외하고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 시	• 청약신청서 (수협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청약신청자 명의) • 본인 도장 (본인의 경우 서명 가능)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법인 신청 시	• 청약신청서(수협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창구접수는 대행은행인 수협은행 지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 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 인이 동일 군 내 중복 당첨 시 모두 무효처리 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동일인이 동일 군 내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되며,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 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가 임의 분양합니다. •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 제64조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 은 5년)] 까지 분양 받는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의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주택법" 제64의 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1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군 별 타입·동·호수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하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2년 5월 13일(금) (16:00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당첨자 안내사항

당첨자 계약기간 준수	• 반드시 지정된 당첨자 계약 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 납부 완료 및 계약 구비서류를 준비 후 계약장소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관련법령에 의거 자격 제한없이 임의 분양함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장소, 미방문,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부정 당첨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공제함. 또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기타사항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 시 사업 주체가 수의계약으로 공급함 • 한국부동산원 추첨을 통해 당첨된 청약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및 인터넷 청약 후 낙첨된 청약자는 사업자의 수의계약 공급 단계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공급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분	방 법
환불대상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 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 된 청약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 자동 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Ⅲ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2022년 5월 16일(월) ~ 5월 17일(화)	10:00 ~ 16:00	신설동역자이르네 견본주택(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45-2)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납부

• 계약금은 분양대금납부계좌로 무통장입금(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여야 하며,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고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여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

※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계약금)	수협은행	1010-2158-4781	코리아신탁(주)	입금 시 층, 세대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A(101)동 501호" 당첨자 홍길동" → 1010501홍길동)
분양대금(중도금, 잔금)		세대별 개별 가상계좌 (계약서 명시)		

• 분양대금(중도금, 잔금)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계약금을 비롯하여 중도금, 잔금은 모계좌 [수협은행 1010-2158-4781, 코리아신탁(주)]로 관리됩니다. • 입금 시 계약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ex) A(101)동 501호를 계약한 홍길동 → 1010501홍길동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해당 지정일에 상기 납부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가상계좌는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납부기일은 익일 은행영업일로 합니다.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당첨된 동·호수를 필히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되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등 어떠한 수납도 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은 관리형토지신탁회사로서 상기 분양수익금을 관리합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구 비 서 류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등록 등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인지세 납부 전자수입인지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 〈수입인지 구입처〉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법인 계약 시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법인인감증명 1통 [용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계약용]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 법인대표이사 본인 계약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직원 및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외국법인일 경우 : 관련 법률상 토지취득허가서 • 인지세 납부 전자수입인지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 〈수입인지 구입처〉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 체결 시 상기 서류 이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1통 [용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내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도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본인이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청약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주민등록증 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으로 당첨 및 계약 체결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계약)자에게 귀속 됩니다. • 계약 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는 경우 공급계약서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사업부지 인근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근린생활시설 배치구조 및 층,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사업부지, 평면도, 배치도 등을 통해 현황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사기간 내 본 건축물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임의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에 관해서는 사업주체에게 위임 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르며,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상기 계약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을 따릅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자(사업주체)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기관 : 추후 별도 고지예정 • 대출금액 :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40%(1~4회차) 범위 내에서 중도금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10%(5회차)는 현금 자납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출조건은 변경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자가 납부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를 대상으로 이자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사업주체 분양사업장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계약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선정은 정부의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입일 조정에 대한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의 결격 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사업주체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제한 등)변경, 국제금융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단대출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제한 될 경우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세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 설정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되며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계약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하며, 금융 신용 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납부 하여야하며(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대출 불가사유로 인해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재외동포의 경우,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10%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은 1인 최대건수 및 대출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및 법인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 불가시 본인 자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주택자 및 다세대 계약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출가능여부를 사전에 금융기관에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선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특유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주택법 제57조 제2항에 의거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주택법 제57조의2에 해당되는 입주자 거주의무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기과열지구 내 공급되는 상품으로 금융기관 대출규제 정책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주택담보대출) 대출시, 소유권 등기 이전일부터 6개월 이내 전입을 의무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대출약정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 전액 상환 및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에 제한 받을 수 있으니 꼭 대출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제한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Ⅳ 계약자 안내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 제64조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5년)]까지 분양 받는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의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주택법" 제64의 3항에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1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전매 관련 내용은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준공 및 입주 예정일 : 2024년 11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합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납 중도금 및 미도래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행정명령, 관계법령의 제정·개정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 보상금액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회사에서 선수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되는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 계약자(수분양자)는 다음 각 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①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따라 "에스티에스개발(주)"와 "코리아신탁(주)"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에 따라 "코리아신탁(주)"이 공급하는 건으로서, "코리아신탁(주)"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사항만을 부담할 뿐이고, 본 분양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분양사업자(분양계약업무, 수분양자 분양금 납부현황관리, 견본주택건립 및 운영, 분양을 위한 일체의 광고홍보 등 분양관련 일체 행위 등)는 "에스티에스개발(주)"임을 "계약자(수분양자)"은 인지하고 동의한다. 또한,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요청 또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해지되는 경우, "코리아신탁(주)"으로부터 "에스티에스개발(주)" 또는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인의 지위가 이전되며, 이에 대해 "계약자(수분양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 "코리아신탁(주)"은 "에스티에스개발(주)"으로부터 토지를 수탁 받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오로지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은 부담할 뿐이고,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대금반환, 입주지연시의 지체상금 책임, 하자담보책임 등)는 "에스티에스개발(주)"이 부담하며, "계약자(수분양자)"는 "코리아신탁(주)"에게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손해 및 비용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③ 본 사업 관련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해지 및 종료(정산 포함)되는 경우 또는 "계약자(수분양자)"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도래 시점"에, "코리아신탁(주)"이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에스티에스개발(주)"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 "계약자(수분양자)"는 일체 이의 없이 동의한다. ④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 등에 따라, "계약자(수분양자)"는 "코리아신탁(주)"를 상대로 일체 하자보수(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 책임은 "자이에스앤디(주)" 또는 "에스티에스개발(주)"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⑤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⑥ "코리아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계약자(수분양자)"는 반드시 "코리아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⑦ "에스티에스개발(주)" 또는 "계약자(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시 해당 기한내(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⑧ "코리아신탁(주)"의 사전 승인 없이, "자이에스앤디(주)"과 "계약자(수분양자)"간에 또는 "에스티에스개발(주)"와 "계약자(수분양자)"간에 "별도의 특약"이 설정된 경우, 해당 별도의 특약은 "코리아신탁(주)"에 대해서는 일체 효력이 없다. ⑨ 본 특약사항의 내용은, 본 계약의 어느 조항보다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인지세 관련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조에 의거하여 최초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시 "계약자(수분양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가산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이에 대한 미납부 및 기타행정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수분양자)"에게 있다.

Ⅴ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 등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발코니확장은 사업주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오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향후 발코니 미확장 요구 및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상당 금액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확장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 (마감재의 폭)의 두께, 천정 환기구 위치, 에어컨 실내기 위치, 노출형 환기유니트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 홍보물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 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평면옵션, 특화품목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 전자식스위치, 세대/통신단자함, 온도조절기 등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 (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박스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외벽은 발코니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외관구성 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되거나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확장 시 동일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는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확장형 세대를 전시합니다. • 발코니확장 시 관련법령 상 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창호 공사 발코니확장 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션-별도계약)

① 추가 선택품목 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 시	22.10.17	입주지정일	
현관 중문	3연동도어	42A	1,230,000	123,000	123,000	984,000	
		42B					
		43					
		45					
거실,복도,주방 바닥 타일	유럽산 포셀린타일	42A	380,000	38,000	38,000	304,000	
		42B	460,000	46,000	46,000	368,000	
		43	450,000	45,000	45,000	360,000	
		45	400,000	40,000	40,000	320,000	
주방 Style Up	전동 유리도어 상부 플랩장+장식조명+수입산 하드웨어, 주방우물천장+간접조명+우드루버판넬, 독립형후드,주방벽,상판 세라믹타일,무선충전콘센트	42A	9,450,000	945,000	945,000	7,560,000	
		42B	10,430,000	1,043,000	1,043,000	8,344,000	
		43	10,290,000	1,029,000	1,029,000	8,232,000	
		45	9,460,000	946,000	946,000	7,568,000	
마감재 Style Up	현관,복도,거실,주방벽 시트판넬+유럽산 대형 포셀린타일(일부세대)+픽처레일	42A	500,000	50,000	50,000	400,000	각 타입별 적용되는 부분 별도 확인 요망
		42B	610,000	61,000	61,000	488,000	
		43	480,000	48,000	48,000	384,000	
		45	400,000	40,000	40,000	320,000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Style Up 옵션 선택 시 우물천장 길이에 따라, 간접조명이 분절 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Style Up 옵션 선택 시 추가되는 유럽산 대형 포셀린타일 적용은 세대별 상이하며 미적용 세대도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② 추가선택 품목 납부계좌 및 입금방법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 옵션품목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선택 옵션품목금액 납부계좌와 도시형생활주택 분양대금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수협은행, 1010-2197-8858]로 관리됩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에 대한 기간이자는 없음) • 중도금 및 잔금납부 : 계약 시 세대별로 가상계좌가 별도 생성되어, 계약서에 명시될 예정이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조정한 별도 공급계약서에 준합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은 시행수탁자인 코리아신탁(주)과는 무관하며, 시공사인 자이에스앤디(주)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선택 옵션품목(계약금)	수협은행	1010-2197-8858	자이에스앤디(주)	입금 시 층, 세대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A(101)동 5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0501홍길동)
선택 옵션품목(중도금, 잔금)		세대별 개별 가상계좌 (계약서 명시)		

■ 가전 옵션

① 천장형 공기청정 시스템 시스클라인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안		설치장소	공급금액	공급업체	비고
42A, 42B, 43, 45	선택1	1대	주방	920,000	자이에스앤디(주)	
	선택2		침실	780,000		
	선택3	2대	주방, 침실	1,700,000		
	선택4	3대	주방, 침실, 거실2	2,480,000		

※ 시스클라인은 선택 옵션에 따라 세대 내 공기 청정화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한국공기청정협회(CA)에서 지정한 소음 기준에 부합하나, 개인별 소음 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천장에 설치되는 제품으로 천장에 설치되는 기타 장애물(스프링클러, 감지기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 시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클라인 구성품은 천장형공기청정기와 리모컨이며 천장형 공기청정기 1대당 제어용 리모컨 1대를 제공하오니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대피공간(전열교환기 설치)과 면한 침실은 천장형 공기청정기와 시스템에어컨이 병렬배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빌트인 가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제조사	모델명	공급금액	전용타입
식기세척기	LG전자	DUB22SB2	1,100,000	42㎡A, 42㎡B, 43㎡, 45㎡
광파오븐		MZ385EBT1	450,000	42㎡A, 42㎡B, 43㎡, 45㎡
B.I 김치냉장고		K221PR14BL/R1	1,450,000	42㎡A, 42㎡B, 43㎡, 45㎡
B.I 냉장전용고 + B.I 냉동전용고		RCL284JBL/R F-A241YM/JM	1,500,000	42㎡A, 42㎡B, 43㎡, 45㎡

※ B.I 냉장전용고+B.I 냉동전용고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콤비냉장고 금액을 차감한 가격입니다. ※ 광파오븐 옵션 선택 시 워밍드로워는 미포함입니다.

③ 가전 옵션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가전 옵션 품목 납부계좌	수협은행	세대별 개별 가상계좌 (계약서 명시)	자이에스앤디(주)

※ 상기 계좌는 가전 옵션품목 납부계좌로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대금계좌, 추가 선택품목 옵션(현관중문, 포세린타일 등)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가전 옵션(천장형 공기청정 시스템 시스클라인, 빌트인 가전) 공사비 납부계좌는 개인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이며, 품목별로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가전 옵션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주택 분양대금 입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정된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공통 유의사항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은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계약과는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과 관련하여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 옵션품목의 계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도시형생활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선택 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도시형생활주택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 발생 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Ⅵ 기타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는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6-48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143세대, 오피스텔 95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면적 ㎡ × 0.3025)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촬영, 보관 예정입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도시형생활주택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반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추후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되는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관리규약의 변경, 폐지 또는 재설정은 입주 이후 구성된 관리단 집회의 의결에 따라야 합니다. • 분양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분양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 할 수 있고,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아니합니다. •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세대 내외 및 공용 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는 납부원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시·군 세무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치도 및 평면도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주변 현황이나, 본 공사 시 설치될 필요 설비기기 및 벽체,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 본 건축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유행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면적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분양면적 증감이 없는 시설물 배치, 구획(칸막이)변경, 입면도상의 마감자재의 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설계변경의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 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등을 확인하신 후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되며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또는 분양 자료와 상이한 부분은 최종 승인도면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건축허가(변경) 도면상 확인이 어려운 부위는 건축허가(변경) 도면을 기준으로 적용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될 수 있는 상행위(부동산 중개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공급자는 위 표시물에 대하여 건축인·허가 당시의 법규에 따라 사용승인을 필한 이후에는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계약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시공 중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는 옥외에 설치되는 조경 및 기타시설물 설치로 인해 소음, 조망, 접근성 등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옥상조경 및 기타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또는 계약자 비용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비상계단, 비상 엘리베이터 등 소방/피난 관련 시설은 비상시나 관리용으로 타 시설과 공유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인·허가 상의 기준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에 사용된 시공사의 로고 및 사업주체의 브랜드, 로고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출입구 및 도로 등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공공기여시설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공동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 등의 권리 행사는 일체 할 수 없고 별도의 대지 구획은 불가합니다. • 본 분양목적물 관련시설 건물 및 단지 내·외부 시설물들의 디자인, 형태 등은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본 분양목적물의 배치, 구조 및 세대별 위치, 향과 층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계약 시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분양목적물은 건축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건축허가(변경)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분양안내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배치, 구획 면적, 모양, 조경 패턴 및 식재, 시설물 디자인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입면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인·허가 변경 및 실시 설계 시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마감자재 내용은 타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면과 상이 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견본주택 및 각종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며, 단지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DA, 생활폐기물보관소, 부대시설,실외기 실치 공간, 자전거보관대, 포장패턴 및 소재, 주변환경, 인접대지와의 레벨차에 따른 단차 처리 방법 및 마감재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시설(자전거보관소, 방재실 등) 및 대지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공공기여시설 입주자(입점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북측과 서측에 계획된 전면공지는 공공에게 개방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유지 및 관리에 발생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부지 남측의 차량진출입구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공공기여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출입구로서 단지 진입 시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 진출입구와 공동 사용함에 따른 혼잡, 통행불편, 사생활권 침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서 등에는 입주자의 타입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타입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안내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층 표시, 주동 외관(동출입구 및 캐노피, 저층부 마감재, 창호 유리/프레임, 난간,옥탑, 지붕 등)의 형태와 색채, 창호 프레임의 돌출치수, 측벽의 루버 설치 범위 및 돌출 치수/색상,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외부 난간 형태, 색상 및 높이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안내 및 각종 홍보물에는 본 건물의 내·외부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분양안내,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 된 단지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동 제연 휀룸 및 지하주차장 휀룸등 DA, 주변현황(단지내외 옹벽 및 조경석, 조경시설, 단지주변 레벨 현황등)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 된 창호, 현관 방화문 도어 및 그릴, 슬라이딩 도어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하드웨어, 프레임 일부, 개폐방향,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현된 점검구 위치 및 크기 수량은 본 공사 시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3년간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 및 주변 도로여건, 개발계획 등 단지여건 및 별도 분양안내,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 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타입 내부 붙박이장류(신발장, 주방장, 붙박이장, 욕실장, 욕실거울 후면 등) 배면 및 접해져 있는 벽, 바닥, 천장등의 최종 마감자재(지정 마루판, 벽지, 타일 등)는 설치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물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시공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으며, 설계 및 공사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상에 명시한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성과도 및 관련 인·허가 심의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타입별, 층별, 향별, 일조, 조망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동일 타입의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홍보물 등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등 설계관련 도서 및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변경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합니다. • 본 단지의 명칭, 층 표시, 주동외관(동출입구 및 캐노피, 저층부 마감재, 창호 유리/프레임 및 돌출 루버 디자인, 난간, 옥탑, 지붕 등)의 형태와 색채, 편의 시설물, 안내시설물, 평입면계획, 외부 난간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등은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 변경 진행시 현장여건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다른 건물이 인접하여 일조, 조망 등의 간섭이나, 소음, 냄새유발 등에 따른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세대 및 인접 건물의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시 설계도서와 견본주택 단지모형 상 외벽 색채, 옥상 조형물 등은 안전사고 방지, 성능개선,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의 주차대수는 261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143대, 오피스텔 95대, 근린생활시설 12대, 공공기여시설 11대)로 차량 진출입구를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공공기여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계획되어 있으며,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주차장은 지하1층~지하4층,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기여시설 주차장은 지하1층 일부에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입주차량과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기여시설 이용차량의 동선 분리를 위하여 지하주차장에 차량 차단기가 추가 또는 이동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차대수 및 구획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수직동선은 도시형생활주택 각 동별 계단 1개소 및 엘리베이터 2개소입니다.(도시형생활주택 전용) • 지하주차장 출입구 구간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공공기여시설 이용 차량과 공용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용도별 주차대수는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므로 주차대수 추가, 용도별 주차대수 변경, 차단기 추가, 택배차량의 지하주차장 진입 등 인·허가 사항 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용도별 주차대수 문제 등에 따라 준공 후 발생하는 주차관련 분쟁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택배 보관함은 지하1층에 통합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후 지하층 보행동선 개선 등을 위하여 택배 보관함 위치가 이동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 향후 대지지분에 대한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써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도로로 인해 소음, 분진, 야간 및 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부지, 현장여건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접지역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 후에도 먼지,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 부지 외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은 개발주체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시공사의 시공 범위가 아님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도시형생활주택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로비 등 공용공간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제공가구 및 마감재 등은 실 시공 시 자재수급 및 현장 여건으로 인해 동급 수준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집기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인허가 과정에서 또는 동선/성능 개선 등을 위해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등), 실내가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을 위한 부대복리시설이지만 개방형 시설로 입주민 외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이에 이용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 옥탑 및 지붕에 경관조명,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실외기, 태양광 패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제연 휀룸, D/A(설비 환기구), 외부계단 및 외부 엘리베이터, 조경 식재 및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위치는 견본주택 내 단지모형 등의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미 건립된 타입의 경우 계약 전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에 설치 타입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월패드 제품사양 및 수량, 위치는 평면 타입 및 옵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미 건립된 타입의 마감재 타입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타입과 상이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 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출입구, 지하출입구, 옥외시설물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건축허가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업무는 입주 후 최대 5개월, 하자보수 업무는 입주 후 최대 27개월)동안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을 요구하지 않기로하며,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분양안내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 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업주체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사가 안내하는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전면공지, 공용공간, 주차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층 세대는 경관 조명 및 각종 사인물에 의한 빛 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근 도로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 이후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입주 이후 "을"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을"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을"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집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의 명칭은 '신설동역자이르네'이며, 행정구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일원에 소재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주택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본 건축물의 외관디자인은 인허가 과정에 의해 디자인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모형에 표현되는 DA, 실외기의 위치, 면적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진동, 유지관리를 위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30㎡이상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2개를 초과하여 공간을 구획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입주 후 입주민의 세대 구획, 변경 등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장의 지하에 설치되는 세대창고는 사업주체가 주민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규모나 용도는 사업주체의 인허가 또는 공사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세대가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후 유지관리에 따른 사용료 등 비용발생시 비용부담 및 관리책임은 입주민에게 있으므로 향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세대창고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향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관련 유의사항

• 단지의 외부 주동 색채 계획·마감재·디테일은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계획된 내용으로, 추후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 및 추가 인허가 절차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폭, 단지와의 단차, 단지 내 도로선형 및 기울기,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완충녹지, 단지 주/부 출입구 도로 확폭 구간)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수반 될 수 있으며, 인허가나 현장 여건에 따라 인접대지 레벨에 따른 경계처리 방안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층에는 단지 내외간의 레벨차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전·후·측면에 경사면 처리 공법에 따라 자연 경사 처리 구간 등이 설치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로 인한 조망권이나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길이, 높이, 재질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주변 보차도와 대지 레벨이 상이하여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모형/CG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옹벽의 높이, 재질 등은 분양 시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진출입구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상 1층에는 생활 쓰레기 및 재활용 쓰레기 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어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실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보관소 및 관리사무소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공공기여시설이 함께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통합 차량 출입구의 진출입 차량에 따라 인근 주동의 세대에는 차량 소음, 매연, 현휘(눈부심)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차량 진출입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급배기용)과 제연휀룸의 급기용 그릴은 본 공사 시 위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외보안등 및 지하, 지상층 CC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TV안테나, 무선통신중계기, 이동통신 안테나, 태양광 패널 등은 옥상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 및 규모, 형태 등은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 등 단지 내외도로와 단지 내 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옥외보안등, 기타 보안시설등에 의한 빛 공해 및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법에 준하여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저, 바닥드레인, 선홈통,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변경) 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공공기여시설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호실별로 주차위치를 전용으로 지정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배선, 배관이 노출됨에 따라 일정 높이 이상의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 등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서는 차량의 문이 기둥 및 벽 등과 간섭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비치된 모형, 각종 CG, 각종 분양안내문 등의 배포광고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및 조감도와 투시도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색상 및 세부사항은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의 조경공간,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경우 외부 벽체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실 시공 시 위치, 규격, 디자인, 재질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단지별 상이할 수 있으며, 본 단지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함, 소화전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또는 실외기 설치공간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시 해당 세대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지붕 및 외부 난간은 실 시공 시 위치에 따라 난간이 설치되며, 디자인, 색상, 위치 등에 대해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 창호는 플라스틱 창호로 계획되어 있어 법적 기준의 단열성능이 확보되어 있으나, 당 사업지의 경우 결로방지성능평가 대상이 아닌 바, 결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세대에서 환기 등의 방법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합니다. • 투시도, 조감도, 배치도에 표현된 본 단지의 일조, 통풍, 채광, 조망 등은 동별, 층별, 세대별로 차이가 있으며, 창호 및 난간의 형태, 분할, 재료, 색상, 유리사양 개폐방향, 제조사 등은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시도, 조감도, 배치도에 표현된 단지 주변의 계획레벨(도로, 광장, 근린생활시설 등) 및 단지에 면한 인접 대지레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단지 경계부의 옹벽/석축 및 계단/램프의 종류, 재질, 사양, 디자인, 색상, 노출범위,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상 자전거 보관소 계획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위치, 규모 및 개소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급배기시설, DA(환기구), 생활쓰레기처리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냄새, 소음, 분진 및 반사광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주변 도로 너비, 차선,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교통계획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접해 있거나, 단지 주변에 있는 시설(도로 등) 및 지형은 인·허가 및 관계기관의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접해있는 인접 건물에 의해 일부세대에서는 조망 및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기관에 주변 현황 및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설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지상2층 및 3층 옥탑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의 식재 종류, 수량, 위치 등은 인허가 및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경 식재 계획으로 인한 일부세대의 조망이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 및 상업시설 밀집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 도로(도시계획도로, 비상차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부대시설의 외벽의 마감재, 색채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체 계획 주차대수 261대 중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전용 주차대수는 143대로 각각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주차, 경형 등으로 구획 또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유효높이 2.7m로 택배차량 등의 진입이 가능하며, 일부 대형 차량의 진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택배차량 및 작업차량은 지하1층(유효높이 2.7m)에 한해 출입이 가능하며, 지하1층을 제외한 기타층은 출입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차 충전장치(지하1층), 자전거 보관소(지상 1층) 및 택배보관함(지하1층)는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변경) 도서 기준으로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로 시공예정이나,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음. 이러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의 위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공용부 등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동 공용부(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 등) 창호 사이즈는 실 시공 시 주거환경 개선 및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고정창 또는 환기를 위한 자동폐쇄장치가 건축허가(변경) 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며, 설치 위치와 개소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처리장은 지상 1층에 설치되고 용도별 구분없이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생활폐기물처리장 인근 세대 및 호실은 소음, 분진,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사양은 지하층, 1층, 그 외 층의 기준이 상이합니다. • 단지 내 일부 외부공간의 경우 지상으로 노출되는 지하층 DA 및 휴게공간 등에 의해 일부 사용상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각 시설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일부 외부공간의 경우 지상으로 노출되는 지하층 DA 및 생활폐기물 보관소, 휴게공간, 외부엘리베이터 등에 의해 일부 사용상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각 시설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한전패드 위치 등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부지의 지상 전기 및 통신 분야의 선로의 지중화는 전력공급 및 통신 관련 시설에 대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및 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접근성 및 주차장 접근의 형평성이 각 주동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및 크기, 안전유리난간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이 어려우며, 이삿짐 운반 시 지하1층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외부에서 지하1층, 지상1층 진출입구로의 접근 동선은 주변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코어 형태에 따라 일부 세대는 엘리베이터 작동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내·외부 바닥 포장 및 외부공간, 식재계획, 시설물계획, 레벨, 경사로 계획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홀, 복도폭, 계단실 형태 및 치수는 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Modified Mericali Intensity Scale) Ⅶ- 0.204g 입니다. • 전면공지 및 외부휴게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주변 건물 및 구조물의 신축,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동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단지 내 시설물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전면공지 및 부대시설, 옥상정원, DA(설비 환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관리소, 주차램프, 외부계단,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면공지 및 전면도로와 인접한 실은 소음, 분진 등 생활권 및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판넬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색채가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설계 변경에 의한 단지 내 레벨, 진출입구 위치, 주동 및 시설물의 배치 등 계획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본 건축물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시공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익스테리어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증(에너지절약계획서 등)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이며, 실적용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나 기술로 변경(설계변경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향과 층에 따른 일조량의 차이가 발생하며, 단지 내 인동거리에 따른 일조량은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없으니, 해당 동의 위치 및 향을 고려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CCTV등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 및 입점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하시기바랍니다. • 동 전, 후면에는 지하시설물의 배기구가 형성되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등이 설치 될 예정이며, 기기 작동 시 하부 세대에 소음, 냄새, 그을음,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정화조 배기는 당 사업지에 냄새에 의한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탈취장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설치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외부장식물에 의한 조망 및 일조 침해 – 지하주차장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제연휀룸/우수조/정화조/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의 탈취기, 송풍기, 실외기 등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및 돌출물/시설물(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태양광판넬, 피뢰침 등) 등으로 인한 일조, 빛공해, 조망간섭 등의 환경권 침해 – E/V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 발생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 •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소음, 진동 등 발생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 주장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일부 공동주택 지붕 및 지상 일부구간에 태양광 집광판, 경관조명, 공청TV안테나,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상세계획(설치면적,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은 건축허가(변경)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전기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문주, 식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전기(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분전반, 통신단자함 등) 설비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관디자인 및 색채계획, 미술장식품계획, 조경계획, 야간경관계획 등은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완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외벽 사인물 설치는 실시공 시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눈부심, 소음, 진동, 유지관리를 위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건물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로고(BI)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낙수 등으로 인한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관련 사항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은 건립되어 있는 43㎡ 타입의 마감자재에 준하여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사양, 갯수, 설치 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단위세대 조명은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보여지는 색상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 내에 설치되는 조명의 색온도는 일반 조명의 색온도와 다를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전시용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고 본 공사시에도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는 43형(도시형생활주택)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수납공간, 면적, 발코니 형태 및 크기 등 견본주택에 전시된 주택형과 다른 사항(마감재, 제공품목 및 가구 디자인 등)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제외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특허권 등 부득이한 경우 및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된 세대의 외부벽체 및 외부 바닥마감, 조경 및 시설물 등은 견본주택 전시용으로 시공되었으며, 본 공사 시 외벽은 해당 위치의 외벽마감(수성페인트 등), 바닥은 외부 조경계획에 따라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마감은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의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위치가 결정됩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트월 타일 및 주방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세라믹타일의 줄눈나누기, 벽체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세대단자함, 세대분전함, 배선기구,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천연가공석,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MMA), 세라믹타일 등의 색상, 디자인, 재질, 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모형, 각종 홍보물 상의 CG 등은 일부 내용이 건축허가(변경) 도서와 차이(도어 및 창호의 위치, 열리는 방향, 도어의 종류(여닫이 또는 미서기 등), 크기 등의 변경을 포함함)가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및 인허가 진행상황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전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같으며 그 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욕실 천정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천연가공석, 엔지니어드스톤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벽, 바닥 타일의 줄눈 위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줄눈 및 타일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 선택 시 기본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됩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도어)의 각종 디테일(프레임, 레일, 유리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거실 아트월(기본제공), 세라믹주방상판 및 세라믹주방벽체(유상옵션)의 패턴은 균일하게 패턴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연출한 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인승, 용량,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변경) 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분양을 위해 사용된 유인물의 치수는 인쇄 과정상 오탈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일부 세대는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중 계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주민 사전점검행사 전 샘플세대 공개행사 및 개별세대 방문을 진행하지 않으며, 현장 방문허가 없이 무단 현장침입 등을 통한 현장방문 시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저,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클라인(옵션), 시스템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겸용 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시설이며, 본 시공 시 냉방전용 시스템에어컨이 제공됩니다. • 천장형 에어컨은 기본제공품목으로 에어컨의 위치 및 용량을 임의로 수정 공사 요청 할 수 없습니다.

■ 광고·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추후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 분양홍보자료 및 각종 홍보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주변 환경 및 개발계획의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 분양홍보자료, 홈페이지, 분양안내 등의 홍보물과 견본주택 내 사인물 및 모형 등에 표현된 계획도로, 공원, 녹지, 종교부지, 보육시설부지 등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예정시설 등은 향후 정비계획 변경, 각종 심의, 실시계획인가 등의 인허가결과, 현장 여건, 설계변경 등으로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의 세부계획(건물의 형태 및 배치, 출입구 및 통행로, 식재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분양안내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광역위치도(약도 및 지도 포함),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각종 자료의 평면은 입면재료, 창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평면이므로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재료 및 창호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의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면재료에 따라 창호의 크기 및 상세가 상이할 수 있고,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현장여건,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모형 및 CG상에 표현된 시설물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연출된 사항으로 집기(테이블, 파고라, 상가 복도 테이블)등의 시설물은 제공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외부 여건 유의사항

• 본 건물의 명칭, 동표시, 외부 입면 및 경관조명 계획은 향후 관계기관의 심의/자문 결과에 따라 입주 시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부지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공공기여시설이 복합적으로 계획되어 있어 각 시설용도에 따른 대지구획을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지하주차장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 이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입주자의 주차장 이용은 주차 가능대수 범위 내에서 입주 후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입면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디자인에 따른 외장재 시공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외장재 차이에 따라 인접한 세대에 비해 외장재의 돌출이 상대적으로 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세대의 열교환기의 급배기 역풍방지용캡이 입면에 노출 등)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관 및 색상, 내부 바닥 패턴 및 색상, 자재는 추후 본 공사 시 지정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입문, 프레임의 크기 및 위치는 단지 및 기타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전면공지, 보행자통로, 에스컬레이터, 조경계획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 사용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공용부의 엘리베이터, 계단에 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위치를 확인하시고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이삿짐용 사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며, 엘리베이터 및 계단만 사용 가능합니다. (단, 엘리베이터로 운반 가능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대관협의 등에 따라 수종(규격, 수량 등) 및 수목위치가 변경 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 등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레벨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입주자자간의 협의를 통해 관리시스템을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사업주체와는 무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광역도로 등 교통망, 인근 개발사업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착공 이후 서울시 동대문구 관리부서(기관)와의 협의에 따라 일부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이 조정·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 확정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지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준공 전 약 6개월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하에 있으며, 시공사에 하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식수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인근에 맨홀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수도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주 출입구 인근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결정되며,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단, 유관부서 협의에 따라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수도, 오수, 도시가스, 전기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각 동 옥탑,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 장비 및 중계기는 지하주차장, 지상층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사인물 등이 설치될 수 있어 눈부심, 세대의 조망, 소음 등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외부의 마감재,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건축(경관)심의에 따라 계획되었으며, 추후 관계 인·허가청의 협의과정 등에서 마감재, 색채 및 경관조명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우편물 보관함 및 무인택배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지하 및 지상층 로비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유의사항

• 붙박이 가구(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시트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나누기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위치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간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악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창호, 시트판넬 등의 고정을 위해 본 공사시 타카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건조기 사용시 온도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욕실장 및 샤워부스의 디자인 및 디테일은 본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선반은 본공사 시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옵션)은 본 공사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단열도어는 본 시공 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침실과 욕실 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제공됩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포세린타일은 대형타일 및 재료적 특성상 인접타일과 일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차이, 자연무늬(베인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공간옵션 등에 따라 타입별 평면 및 마감재 적용 부위가 상이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가구 하드웨어(힌지 및 레일 등)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 시 동일 평면이지만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벽(PD포함) 및 기타 조적벽 등은 현장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가 비내력 골조 혹은 경량벽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포함) • 화재 등 비상상황 시 발코니에 인접한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하부층으로 이동 할 수 있으며, 비상 대피시설로 활용되는 제품으로 사용방법 등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 등 비상시 대피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 물건의 적치 등으로 피난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 설치에 따른 소음 등의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난방용 보일러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보일러 가동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수입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주체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수준의 타사제품으로 본 공사 및 하자 보수 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이나 견본주택에는 마감재 이외에 옵션품목 및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등은 실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등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 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연자재는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결(vein: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 시공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결(vein:베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씽크대 내부의 가구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 내 욕실 세면기, 양변기, 주방 개수대, 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 내 설치되는 악세사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타입 시공 시 가구 간섭부분은 가구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각 타입에 연출되어 있는 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펜던트는 전시용으로 실 시공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별 내부 단차 부위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각 부분의 창호 크기, 개폐방향, 세부 사양 등은 세대 타입별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크기와 상이 할 수 있으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 및 문의 형태와 위치는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브랜드,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의 디자인, 프레임, 유리두께, 손잡이, 안전난간 설치여부 등은 안전, 외부 입면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일부 타입의 창호 등 사이즈는 추후 경미한 설계변경의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수납가구와 주방가구, 욕실가구 및 샤워부스, 마루, 목창호, 방화문은 본 공사 시 시공사별 입찰 결과에 따라 제조사, 브랜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폭과 색상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 붙박이장, 신발장의 하부, 욕실 중 일부(샤워부스 하부, 드레인 주변, 양변기 주변, 세면기 하부등)에는 난방 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타일은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 발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가구 간섭부분은 가구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문 및 타입 철재도어의 도장, 색상, 디자인 및 세부 디테일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현관문의 경우 승강기홀의 내부 압력을 확인하기 위한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마감재 및 창호류(방화문 포함)등은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에서 선임한 감리"가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의 내화 시험 등에 통과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설치한 경우, 준공 후 이에 대한 품질이나 성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거실/복도 바닥, 욕실 벽/바닥, 복도/거실 아트월 등의 타일 나누기는 실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벽, 천장 부분에 가구(주방, 싱크대, 침실,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포함)등으로 가려진 부분은 최종마감재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싱크대, 신발장, 붙박이장 하부는 판넬히팅 제외됩니다. • 현관바닥, 아트월 등의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 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아트월 타일 모서리 부위에 재료분리대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TV 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변경) 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 공간 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에서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세대별 세대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 점검구의 위치, 사양, 크기, 개소는 시공성과 관계 법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난방 요금이 부과되며, 각 세대별 냉방, 난방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단위세대 설비, 전기,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일부 타입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세대별,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전위치, 바닥레벨, 단차부위, 천장마감, 세대 환기설비, 수전, 전기스위치 콘센트 등은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타입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씽크대 하부의 가구 디자인은 온수분배기 등 설비기기가 설치됨에 따라 견본주택 사양과 내부 폭 가구 디자인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전기, 설비 마감재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욕실 천장, 주방천장 또는 주방가구 내부 등에 설치됩니다. • 침실이 인접한 세대 화장실에 면해 있는 경우 물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외벽면에는 실내 욕실 및 주방 후드배기용, 환기장치용 환기캡이 설치되며 설치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노출형 환기유니트가 거실천장에 노출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 설비의 필터인 헤파필터는 연 1회~2회 교체를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주기는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필터구입 및 교체는 입주자 분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환기 디퓨져,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 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 환기조절기 등은 시스클라인 선택 유무 및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 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거실천장에 환기유니트 시스템 설치로 인해 점검구 및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 및 상부장 수납공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및 공용부(복도)에는 별도의 냉난방 및 환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세탁실은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설치 또는 상층 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 천장 설치 또는 두 가지 모두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대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복도, 외벽 및 계단실 일부에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세대 공급용 가스관이 노출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에 설치되는 각종 기구류 등의 사양은 각 시설의 기능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들은 설치되는 각종 기구류의 사양 등에 대한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은 입주민들의 책임과 부담하에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관리단의 구성 이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인 비용으로 유지,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이는 공동주택 시설물로서 상가 입점자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세대 화장실 천장 내 설치되는 급수급탕분배기는 당해세대 분배기로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 지하에 설치되는 정화조 등의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세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옥상에 소화활동을 위한 제연팬, 근린생활시설 탈취기, 정화조 배기팬, 실외기 등의 설비장비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최상층 및 인접 건물의 세대에서는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냄새 등 및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주차장 기둥에 소화전 설치로 주차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인조대리석 및 석재 / 타일 자재의 경우 제조과정에 따라 무늬 및 색상이 다소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 사항이 아닙니다. • 입주자의 실내 생활 환경 (세대 환기 빈도 등)에 따라 창호 및 마감재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 사항이 아닙니다. • 공급계약서 분실 사유로 공급계약서 재발행 요청 시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 및 재발행 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등의 사유로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갯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침실 내에 세대분전함 또는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의 세대통합단자함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공과정에서 위치 및 마감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 전원 및 통신단자용 통합콘센트가 주방(조리대 등)에 설치되는 경우, 후면에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장소별 색온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마감 상황(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도배와 가구 설치내용 등)과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고려하여 월패드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신발장, 현관 또는 창고, 기타 세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단자함 등이 개별(또는 통합)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 기타 마감이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세대단자함, 세대분전함, 배선기구,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난방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보일러가 제공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보일러는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가스배관은 보일러 사용을 위해 실외기실에만 설치가 되며, 주방에는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 주방에는 가스 공급이 되지 않으며 이 경우 가스쿡탑 설치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주방가구 옵션과 국산주방가구의 레이아웃, 구성, 악세사리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Ⅶ 기타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회사명	감리금액(단위 : 원 / VAT별도)	비고
건축 감리	주식회사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650,000,000 원	–
전기, 소방, 통신 감리	주식회사 지케이엔지니어링	345,500,000 원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시설입니다.

■ 도시형생활주택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보증명칭 : 신설동역자이르네(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분양보증

■ 분양보증금액 및 보증서 번호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92022-104-0001600 호	일금 칠백삼십이억사백이십만원정 ₩73,204,2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분양보증약관(제정 2014.07.31, 개정 2017.11.27)보증사고의 정의, 보증채무의 성립,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구분	내용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상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 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 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 (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사고의 정의 (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 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 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시공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 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 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사업관계자 현황

구분	시행 위탁자	시행 수탁자	시공사		분양대행사
상호	에스티에스개발(주)	코리아신탁(주)	자이에스앤디(주)	지에스건설(주)	(주)연합플래닝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38, 14층 (대치동, 동일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11층,14층,17층 (대치동, 해성2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10층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 (청진동)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10 (청담동,신한빌딩2층)
법인등록번호	131111-0126944	110111-2937831	110111-1934557	110111-0002694	110111-2495988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 부동산개발업 등록자 :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11층,14층,17층(대치동, 해성2빌딩)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 100095 –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 공급대상물의 소재지·지목·용도·규모
  - ①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6-48번지 일원 ② 지목 : 대 ③ 용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 ④ 규모 : 지하4층~지하1층(주차장, 기계실 등), 지상1층(근린생활시설), 지상2층(공공기여시설), 지상3층~20층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지상3층~지상18층(오피스텔)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 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완납 시 개별등기 – 시공업체의 명칭과 공급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사의 명칭 : 모집공고 참조
- 공급대금의 관리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관리자의 명칭 및 등록사업자와의 관계 : 모집공고 참조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신탁회사의 명칭 : 모집공고 참조

• 견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45-2 • 분양 홈페이지 : http://신설동역자이르네.com • 분양문의 : ☎ 02-959-7800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 상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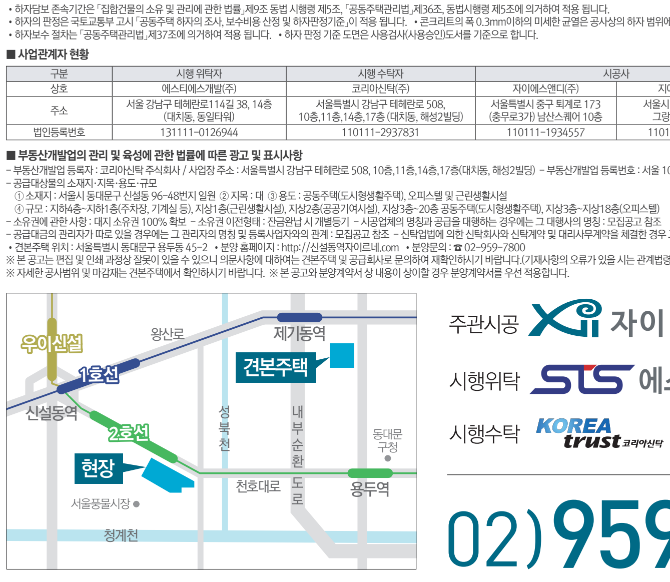

주관시공 Xi 자이 S&D

시행위탁 STS 에스티에스개발(주)

시행수탁 KOREA trust 코리아신탁

02)959-7800